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의 안 번 호	제962호

제출년월일 : 2006. 3. 20.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 장수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노인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로효친을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당 지급대상자는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수노인(85세 이상인 자)으로 함. (안 제3조)

나. 1인당 월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로 하고, 수당을 신청한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안 제4조)

다.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함. (안 제5조)

라. 수당은 수당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수당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안 제7조)

마.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고성군 관할 구역 외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수당 지급을 중지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나.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5-656호(2005. 12. 26.~2006. 1. 15.)
⇒ 의견제출사항 없음.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 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 (이하 "수당" 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수당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자는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수당을 지급 받고자 신청한 자에 한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 ①수당 1인당 월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③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5조(수당지급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 ·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②수당의 지급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수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매월 16일까지 군수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으로부터 수당지급 요청을 받은 군수는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하되, 분기별 지급 시는 해당 분기 말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달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기간) 수당은 수당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독거노인 사망 시 최종 수당 지급 월 처리는 수당지급 전 이미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지급이 가능하다.

제8조(수당지급중지)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수당 지급대상자가 고성군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수당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3.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 · 면장은 관할구역 내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대상자와의관계		의
수당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 · 면장 귀하

※계좌번호 확인이 필요하오니 통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계좌번호	지급 신청일	지급 중지일	중지 사유	비고